

2015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61
----------	----

제출년월일 : 2015. 4. .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15년도 평창군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의회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반영하여, 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환하고 추가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나. 기금운영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천원)

기금명	계획액	기정계획액	증감
합계(5건)	3,574,318	3,566,842	7,476
통합관리기금	499,814	499,814	0
사회복지기금	1,116,749	1,116,749	0
체육진흥기금	280,109	280,109	0
식품진흥기금	48,290	40,814	7,476
재난관리기금	1,629,356	1,629,356	0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